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82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 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정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 감사요청 동의수가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감사요청(안 제3조)
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2항 개정(2023.10.24)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 수 변경
 - 10분의 3 이상의 동의 → 10분의 2 이상의 동의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‘안 제3조’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표자 선정 및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을 기존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 이상”을 “2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 이상”을 “2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감사 요청)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<u>3</u>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정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(이하 “감사 요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<u>3</u>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2. (생략) ③ (생략)	제3조(감사 요청)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<u>2</u>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정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(이하 “감사 요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<u>2</u>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